

---

# **기업사업재편 지원제도 구축방안**

**- 특별법 제정 건의 -**

---

**2015. 4**



# 목 차

I. 건의 배경 .....	1
II. 일본 사업재편지원제도 특징과 성과 .....	6
III. 국내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	12
1. 기본 방향 .....	12
2. 지원분야 및 지원계획 승인요건 .....	15
3.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절차 .....	19
IV. 세부 지원과제 .....	21
1. 상법 관련 특례 .....	21
2.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 .....	28
3. 세제지원 특례 .....	34
4. 금융지원 특례 .....	41

## 요 약

건의 배경

- ◇ 한국경제 성장동력 약화 추세
- ◇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 높이기 위해 기업이 상시적으로 혁신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현행 사업재편제도는 부실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정상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한계
-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운영 사례를 참조해 정상기업의 선제적·능동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

국내  
구축방안

- ◇ 3대 입법방향 제시
  - 1) 정상기업의 선제적·상시적 구조개선 지원
  - 2) 상법·공정거래법·세제·금융특례를 패키지로 제공
  - 3)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되면 일반법으로 반영

패키지  
지원과제  
(4대 분야  
22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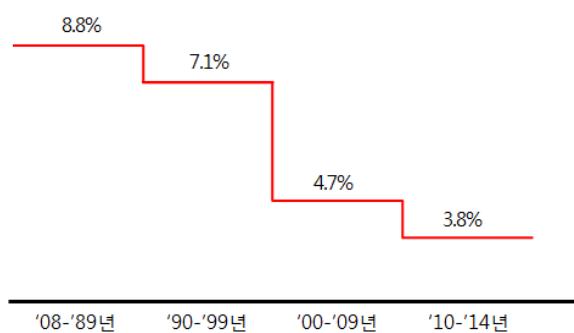
- ◇ 상법 관련 특례
  - 소규모/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등
- ◇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
  -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인가 간주,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 ◇ 세제지원 특례
  - 과세특례 사업재편에 대한 사후추징 완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등
- ◇ 금융지원 특례
  -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조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제도와 연계 등

## I. 건의 배경

### □ 최근 우리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도 약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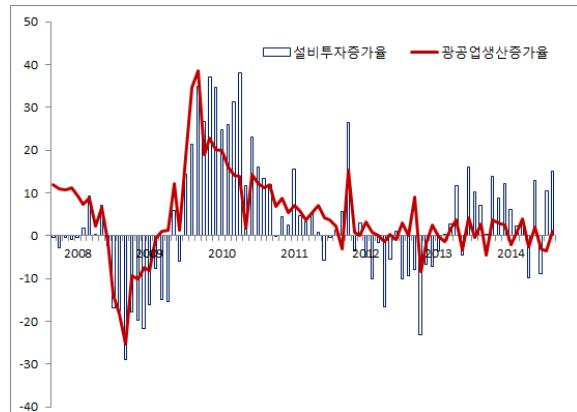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GDP)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 설비투자 등 산업활력이 저하

<기간별 평균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광공업생산, 설비투자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중장기 경제전망도 밝지 않음. 2031~2060년 우리나라 중장기 잠재성장률은 OECD국 평균(1.8%)에도 못 미치는 1.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국가	2000-2007년	2008-2013년	2014-2030년	2031-2060년
한국	4.6	3.7	2.9	1.6
미국	2.6	2.0	2.4	1.7
영국	2.6	1.0	2.6	1.9
일본	0.7	0.5	1.1	1.2
유로존	1.7	0.9	1.7	1.5
OECD평균	2.2	1.7	2.2	1.8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OECD, '14년)

## □ 제조업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新샌드위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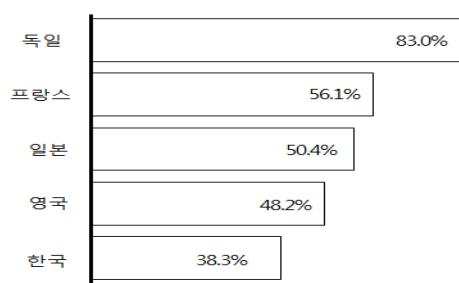
- 미국 'Remaking America', 독일 'Industry 4.0', 일본 '산업재흥플랜' 등 선진국 제조업 부흥전략과 중국의 '自主創新' 등 신흥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속에 한국제조업은 新샌드위치 상황에 봉착
-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경쟁국에 비해 혁신노력이 미흡하여 제조업 혁신도는 일본의 76%, 독일의 46%에 그침

<제조업 경쟁력 순위>

순위	'10년	'13년	'18년
1	중국	중국	중국
2	인도	독일	인도
3	한국	미국	브라질
4	미국	인도	독일
5	브라질	한국	미국
6	일본	대만	한국

\* 자료 : 美경쟁력위원회

<제조업 혁신도(혁신업체/제조업체)>



\* 자료 : OECD

## □ 경제활력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상시적으로 혁신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지속성장을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
-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일수록 M&A를 빈번히 활용

<포천 글로벌 500기업의 순위변동과 M&A 활용도<sup>1)</sup>>

해당기업수	지속유지군	신규진입군	순위탈락군
해당 기업수	236	180	175
기업당 평균 M&A 건수	3.0	1.9	0.9
M&A 활용률(%)	61.0	53.3	30.9
M&A 평균규모(백만달러)	8,033	3,388	1,264

주) 1999년 포천 글로벌500기업 리스트와 2008년 500기업 리스트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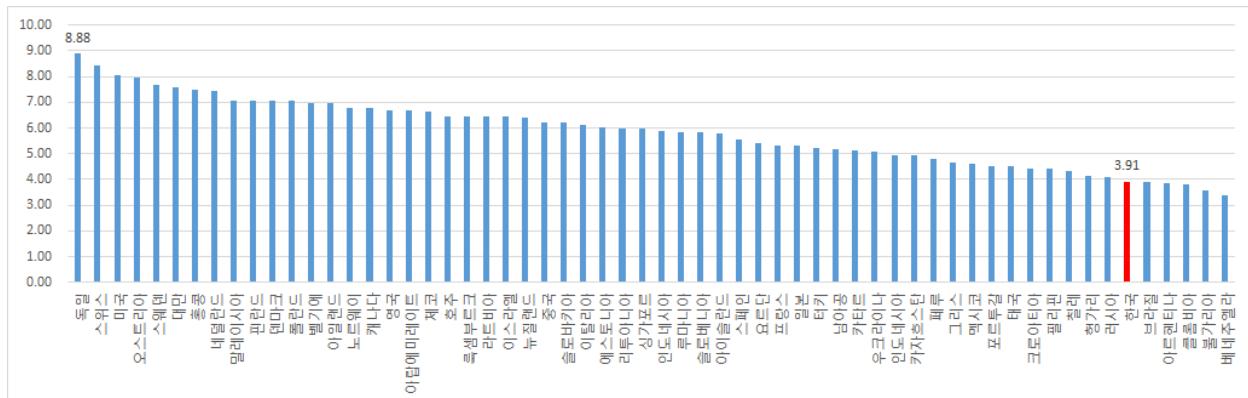
-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

1) 삼성경제연구소(2010.5.6), 글로벌 기업 M&A에서 배우는 교훈

하는 선순환구조가 취약.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

\*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은 60개국 중 55위로 최하위 수준(IMD 보고서)

### <국가별 중소기업 생산성 및 효율성>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모바일시장에서 급성장한 엘로모바일\* 같은 사례가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벤처연합 엘로모바일 사례>

엘로모바일은 다수의 벤처기업들과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연합체에 속한 벤처기업들에게 쇼핑, 미디어·콘텐츠, 광고·디지털마케팅, 여행, O2O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지주회사 체제의 종합 모바일 서비스 기업.

연합체 소속 기업들은 각각 독립적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엘로모바일로부터 재무·인사 등의 경영관리와 디자인·개발·전략수립·브랜드효과 등의 지원을 제공받음.

현재 엘로모바일은 설립된 지 2년만에 5개 사업별 지주회사를 통해 60개 벤처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경기불황기일수록 기업 사업재편의 최적기가 될 수 있음

[사례] BCG가 미국 상장회사 277개의 M&A 거래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불경기의 M&A가 호황기보다 성사율이 5.2%p 높으며, 수익률(RTSR ; Relative Total Shareholder Return) 측면에서도 14.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Winning Through Mergers in Lean Times, BCG 2003년)

□ 현행 우리나라 사업재편제도는 사후적 구제조치에 치우쳐 있고 개별법에 산재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능동적인 사업재편지원에 한계

-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채권은행 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제도가 운영중

구분	주요내용
주채무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차입규모가 큰 대기업그룹 대상 *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 0.075% 이상</li> <li>》 매년 평가하여 재무구조불합격 기업대상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하고 점검·관리</li> </ul>
채권은행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li> <li>》 신용위험 평가 거쳐 7~10월 부실징후기업을 선정·구조조정</li> </ul>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li> <li>》 4~6월 신용위험 평가, 부실징후기업(C,D등급) 워크아웃 추진</li> </ul>
법정관리 (통합도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D등급) 대상</li> <li>》 법원주도로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li> </ul>

- 정상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제도 있으나 특정산업, 기업에 국한

구분	주요내용
중소기업사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상 어려움 겪거나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원</li> <li>》 상법상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li> </ul>
금융산업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합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득한 금융기관은 타법에 의한 인가의제</li> <li>》 합병절차 간소화, 세제/금융지원 등 특례적용</li> </ul>

-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재편수단이 있으나 연

계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의 사업재편에 한계

구분	지원내용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시 주총승인 사항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li><li>》 소수주주 보유지분에 대해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li><li>》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주식 외 현금, 모회사주식 등으로 화대 등</li></ul>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의 간이심사</li><li>》 기업결합 제한 예외인정(효율성증대, 파탄기업 구제)</li><li>》 공동행위 제한 예외인정(산업합리화, R&amp;D, 불황극복, 구조조정 등)</li></ul>
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격합병시 합병차익 과세이연,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등</li><li>》 적격분할시 분할차익 과세이연, 분할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등</li><li>》 적격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피출자법인 취득세면제 등</li><li>》 적격영업양수도시 피인수기업 및 그주주, 인수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등</li><li>》 적격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li></ul>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공동출자 금지, 손자회사 출자규제 등은 기업의 투자기회를 가로막고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현황>

- 》 지분율 규제(자·손회사 20~40%, 중손회사 100%), 부채비율 200% 이내
- 》 비계열사의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 》 지배하는 회사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수직적 출자구조 의무)
- 》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 II. 일본 사업재편지원제도 특징과 성과

### □ 일본은 침체된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법률을 제정

-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일본경제의 부흥을 꾀함
-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4회에 걸쳐 산업활력법을 개정하였고 2013년 말 과소투자·과잉규제·과당경쟁 극복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편

산업활력법('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13년)
》 과잉설비·과잉채무·생산성저하 해소	》 과소투자·과당경쟁·과잉규제 해소
》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지원	》 산업신진대사촉진(사업재편·첨단설비 투자촉진·벤처기업지원),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Gray Zone해소제도)

### □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재편계획',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구분

-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생산성향상, 재무건전성 제고 등 경영성과가 기대될 때 정부는 계획을 승인

<사업재편계획 및 특정사업재편계획 승인 충족요건>

구분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사업구조 변화	다음 중 하나의 구조변경 ①합병 ②회사분할 ③주식교환, 주식이전 ④사업 또는 자산양수도 ⑤출자의 수용 ⑥타기업의 주식·지분 취득 ⑦회사설립 ⑧유한책임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⑨시설·설비의 상당 정도의 철거	다음 중 하나의 구조변경 ①완전자회사 상호간 합병 ②공동 신설분할 ③완전자회사에 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흡수분할 ④완전자회사가 행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출자도입 ⑤완전자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회사의 설립

계획 기간	3년 이내	10년
생산성 향상 (사업단위)	계획 시작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달성 예상 ①수정 ROA 2%p 향상 ②유형 자산회전율 5% 향상 ③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 6% 향상	계획 시작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지표의 달성 예상 ① 수정 ROA 3%p 향상 ②유형 자산 회전율 10% 향상 ③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 12% 향상
재무건전성 (기업단위)	계획 시작부터 3년 이내에 다음 두 달성 예상 ①부채 / 현금흐름 $\leq$ 10배 ②경상소득 $\geq$ 경상지출	
고용배려	계획에 따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충분한 논의, 실시에 즈음하여 고용안정 등에 충분한 배려	
달성목표	계획 시작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달성 예상 ①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생산·제공(♣매출비중이 전체의 1% 이상) ②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설비능률 향상(♣단위생산원가 5% 이상 절감) ③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서비스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단위판매비용 5% 이상 절감) ④새로운 원재료·부품·반제품의 사용 or 새로운 구매방식 도입(♣제품 단위당 생산원가 5% 이상 절감) ※ 특정사업재편계획의 국내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경우 ①에 한함	
새로운 수요개척	-	계획 시작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달성 예상 ①해외에서 새로운 수요 상당개척 ②국내에서 새로운 수요 상당개척 (♣매출 증가율 $\geq$ 과거 3개 사업연도 업종매출성장률+5%p)
경영지원	-	모든 신청 사업자가 특정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특정 회사의 중요한 경영 지원 ①특정 회사의 사업과 관련 지식을 갖는 임직원의 파견 ②기술 지원 ③판로개척 협력 ④ 자재조달 협력 ⑤제조·R&D·관리업무 등의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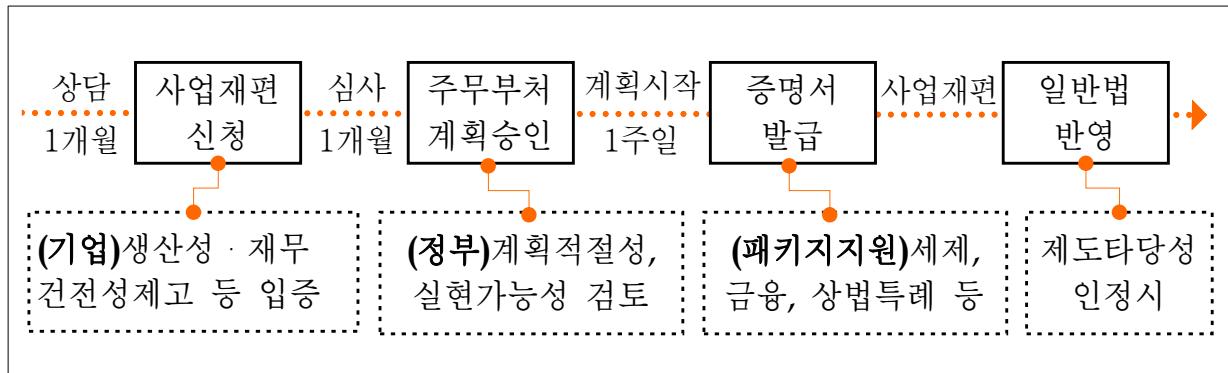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사업재편제도, 특정사업재편제도는 구법인 산업활력법의 사업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등 세부계획을 통합한 것임

-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①기업맞춤형 제도, ②패키지지원, ③기업판 특구제도 등 3가지 특징

- **(기업맞춤형 제도)** 기업이 스스로 경영개선 의지를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분야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사업재편을 승인·지원

<일본 사업재편제도 절차>



- **(패키지지원)**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 패키지로 제공함(세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음<sup>2)</sup>)

구분	지원내용
세제감면	》 등록면허세 50% 감면, 사업양도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3%→2.5%),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20~100%) 등
회사법 절차 간소화	》 주총 면제범위 확대 통한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유상감자시 주총면제 등
공정거래 규제완화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30일→ 7~15일) 등
금융지원	》 기업에 출자를 한 금융기관의 손실액 보전(출자액의 50~80%), 자금차입 등에 대한 채무보증 등

2) 1999~2014년까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의 정부 지원내용으로 세제지원이 73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회사법상 특례적용이 199건, 금융지원이 127건임

- **(기업판특구)**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일반법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
  - \* 합병대가의 유연화, 약식조직재편 요건의 완화 등 산업활력법상의 회사법 특례 규정의 상당수가 2005년 신회사법으로 이관

#### □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지원을 통한 생산성향상, 고용증가 등 성과

- 일본 정부는 1999~2015년 2월까지 총 628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 \* 산업활력법 적용 612건, 산업경쟁강화법 적용 16건

<산업활력법 적용 사업재편계획 승인건수('14.1월 기준)>

사업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공동사업재편	사업혁신 설비도입	총 612건 승인
518	56	7	3	
자원생산성 혁신	자원제약 대응제품 생산설비 도입	경영자원융합	사업혁신 신상품 생산설비 도입	
21	2	4	1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성이 1999~2007년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종료한 208건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 달성을 상황을 조사한 결과 179건(86%)이 생산성 향상 기준치 이상을 달성(현대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11년 2월)
- 2003~2007년까지 사업재구축 계획을 승인받은 103개사는 총 49,281명을 신규고용(기업당 평균 469명 추가 고용)

## <산업경쟁력강화법 적용 사업재편계획 승인사례(11건)>

회사명 (승인일)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지원조치
아사히/ BS아사히 (14년 3월)	》 방송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그룹재편 》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 8.6% 향상, 신상품 매출을 전체 매출의 1.1% 이상 달성	등록면허세 경감
테이블마크 (14년 3월)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 테이블마크의 냉동상온가공식품사업을 분할해 티에무(100% 자회사)에 승계하고 지주회사로 전환 》 직원 1인당 부가가치 33.6% 향상	등록면허세 경감
비제이홀딩스 (14년 3월)	》 합병을 통한 사업성장 》 비제이홀딩스가 빅로브 전 주식을 취득하고 흡수합병 》 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 8% 향상	등록면허세 경감
VJ홀딩스 (14년 6월)	》 사업양수에 의한 경영자원의 최적화 》 VJ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VJ가 소니의 국내 PC사업을 양도받고, 이후 VJ를 VJ홀딩스에 흡수합병 》 수정 ROA 28.7% 향상, 신상품 매출을 총매출 대비 8% 이상 달성	등록면허세 경감/ 채무보증
유니티카 (14년 6월)	》 출자수용에 의한 사업성장 》 JIS에 100억엔 우선주 할당, 주요 거래은행이 보유한 275억엔 대출채권을 출자전환 》 수정 ROA 4.1% 향상, 신제품 매출을 전체 매출의 4.6% 이상 달성	등록면허세 경감
라구나텐보스 (14년 7월)	》 사업 분할승계에 의한 가치향상 》 라구나텐보스는 가마고리해양개발공사로부터 테마파크, 상업시설, 해수온천시설 3사업을 분할승계 》 수정 ROA 2.1% 향상, 매출판매 관리비 비율 8.4% 경감	등록면허세 경감
JAPAN 3D DEVICES (14년 9월)	》 출자수용에 의한 사업성장 》 새로운 제조설비 도입위해 미네베아(주)에 대한 제3자 할당증자 실시 》 수정 ROA 28.6% 향상, 신제품 매출을 총매출 대비 72.1% 이상 달성	등록면허세 경감/ 채무보증
토사전기철도 /토사전기드림 서비스 (14년 9월)	》 사업통합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재무구조의 안정성 》 공동으로 회사분할을 실시해 신회사를 설립하고, 신회사가 모든 사업승계 》 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 6.7% 향상, 노선버스 1대당 비용을 5.5% 개선	등록면허세 경감
자오관광 개발공사 (14년 9월)	》 사업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화 》 로프웨이, 리프트 등 삽도사업에 관한 운영형태 일원화 》 수정 ROA 3.3% 향상, 신상품 매출을 전체 매출의 1% 이상 달성	등록면허세 경감

동경도민은행 /팔천대은행 (14년 9월)	》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자원의 최적화 》 공동 주식이전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 두 은행이 새로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영통합 》 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 6.1% 향상	등록면허세 경감
소시오넥스트 (15년 2월)	》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 소시오넥스트가 FSL, 파나소닉의 LSI사업 승계 》 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 34.0% 향상, 신상품 매출을 총매출 대비 3.6% 이상 달성	등록면허세 경감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산업경쟁력강화법 적용 특정사업재편계획 승인사례(5건)>

회사명 (승인일)	특정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지원조치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제작소 (14년 1월)	》 화력발전 관련부서의 통합 》 양사 사업통합을 위한 준비회사로 MH파워 시스템즈를 설립하고 양사가 통합대상 사업을 흡수분할하여 승계 》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 26% 향상	등록면허세 경감/투자손 실준비금
신일철주금 /토호티타늄 (14년 3월)	》 두 회사의 기술활용에 의한 소재생산 기반 구축 》 신일철주금이 사업을 자회사에 승계시키는 회사 분할 (EB로 관련 사업을 승계)을 실시한 후, 토호티타늄으로부터 출자를 받음(제3자 할당증자) 》 1인당 부가가치액 1.9배 증가, 단위당 생산원가 9% 감소	등록면허세 경감/투자손 실준비금
미쓰비시Mt. /히타치금속 (14년 6월)	》 두 회사의 자원활용에 의한 항공기·에너지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 미쓰비시머티리얼 자회사인 MMC슈퍼알로이에 히타치금속이 제3자 할당방식으로 증자참여 공동경영 》 1인당 부가가치액 23% 향상	등록면허세 경감/투자손 실준비금
우라베산업 /竹商 (14년 7월)	》 두 회사의 기술력, 영업·서비스능력 등을 통합하여 생산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 우라베는 완전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주식회사 竹商를 인수대상으로 하는 제3자 할당증자 실시	등록면허세 경감/투자손 실준비금
미쓰비시중공업 /III (14년 9월)	》 두 회사의 자원활용에 의한 항공기엔진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 미쓰비시중공업이 민간항공 엔진사업을 자회사 미쓰비시중공업항공엔진에 양도하고 III,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제3자 할당증자 》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을 23% 향상, 단위당 생산원가를 21% 감소	등록면허세 경감/투자손 실준비금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III. 국내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 1. 기본 방향

---

##### □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재편 효율성 제고

- 개별법을 개정해 특례를 둘 경우 사업재편 기대효과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정낭비 등 부작용 우려
-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려 해도 어떤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제도적 장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안다 해도 일일이 해결하기 힘든 기업현실을 감안할 필요
- 특히 자발적인 사업재편 활동이 활발한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강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 현황>

- 》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목적으로 사업전환촉진제도 운영중. 자금, 세제, 컨설팅, 상법상 절차특례 등 지원(2013년 163개사 계획 승인)
- 》 사업재편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제조업의 4.8%만 사업전환 추진. 95.2%는 향후에도 사업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중기청)

-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 □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지기 전 선제적·상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자원투입을 최소화

- 기업이 부실화 됐거나 부실징후가 나타난 이후의 사업재편은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

###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sup>3)</sup>>

구분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
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주 :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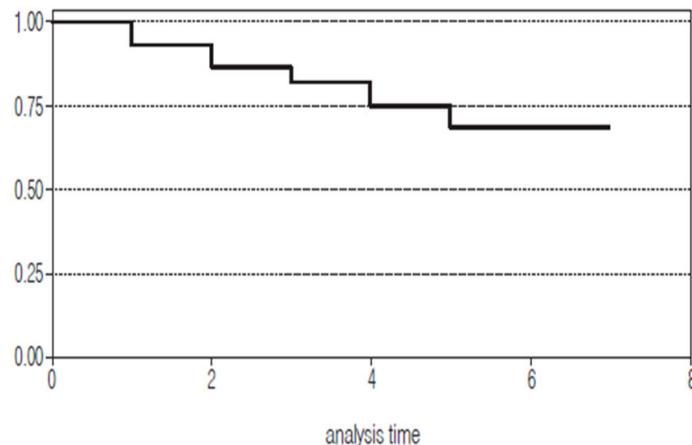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회생절차 개시 이후 2년내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는 13%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해도 25%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데 그침

### <K-M estimation : 회생기업<sup>4)</sup>>



3) 자료 : 산업연구원(2014.12월), 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

4) 자료 : 산업연구원(2014.12월), 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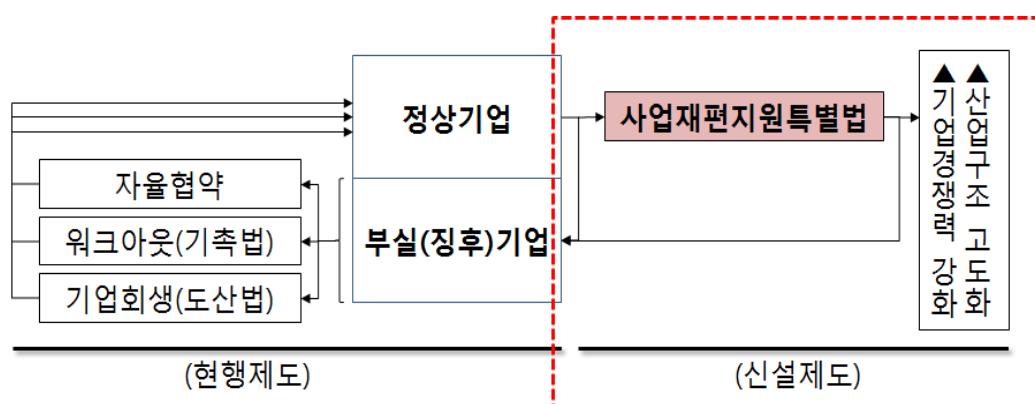
- 글로벌 장수기업의 공통점은 사업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단행하여 100년 이상의 지속성장세를 유지

#### <해외 주요장수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

- 》(듀폰) 1802년 창립. 포천 500대 기업중 최장수 회사. R&D역량 강화 통해 성장세 지속했으나 사업다각화로 1990년대 위기봉착과 사업재편 단행. 종자사업기업 인수(99년), 섬유사업 매각(04년), 코팅사업 매각(12년) 등 추진. 90년대 초반 전체매출의 60%를 차지했던 정유·화학섬유사업 축소, 고기능소재, 농업분야 매출이 전체의 70%를 점유하는 등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
- 》(지멘스) 1868년 철강회사로 출범. 2차 세계대전까지 전신·전기분야 기업으로 성장. 이후 70년대 가전·통신, 90년대 반도체·발전·의료기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90년대 수익성 악화로 이후 대대적인 사업재편 단행. 기존 핵심사업인 반도체·휴대전화·원자력 부문 매각하고 산업솔루션·에너지·헬스케어·도시인프라 등 4대 사업에 집중. 핵심 4대사업 비중이 2001년 49%에서 2011년 99%로 사업구조 탈발꿈

\* 자료 : 한국경제매거진(2015년 1월 5일 기사)

####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 및 사업재편지원특별법 개념도>



## □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 금융상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

- 현재는 개별법령에 의해 단절적 ·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방향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어렵고 시너지효과 미흡, 지원공백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One Stop서비스가 불가능
  - \* 예컨대 신속한 합병을 위해 상법상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재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 정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사업재편 절차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 □ 시범운영(Test Bed) 후 법적 안정성이 검증되면 일반법으로 반영

-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다양한 구조재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해관계자 대립, 법적기반 마련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재편의 최적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시범운영을 통해 법적 안정성이 인정되면 일반법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법률시스템이 정비되면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 기대
  -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지원 효율성 제고, 검증된 사항에 대해 일반법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안정성 기대 등
- 일본의 경우도 합병대가의 유연화, 약식조직재편 요건의 완화 등 산업활력법상의 회사법 특례 규정의 상당수가 2005년 신회사법으로 이관

## 2. 지원분야 및 지원계획 승인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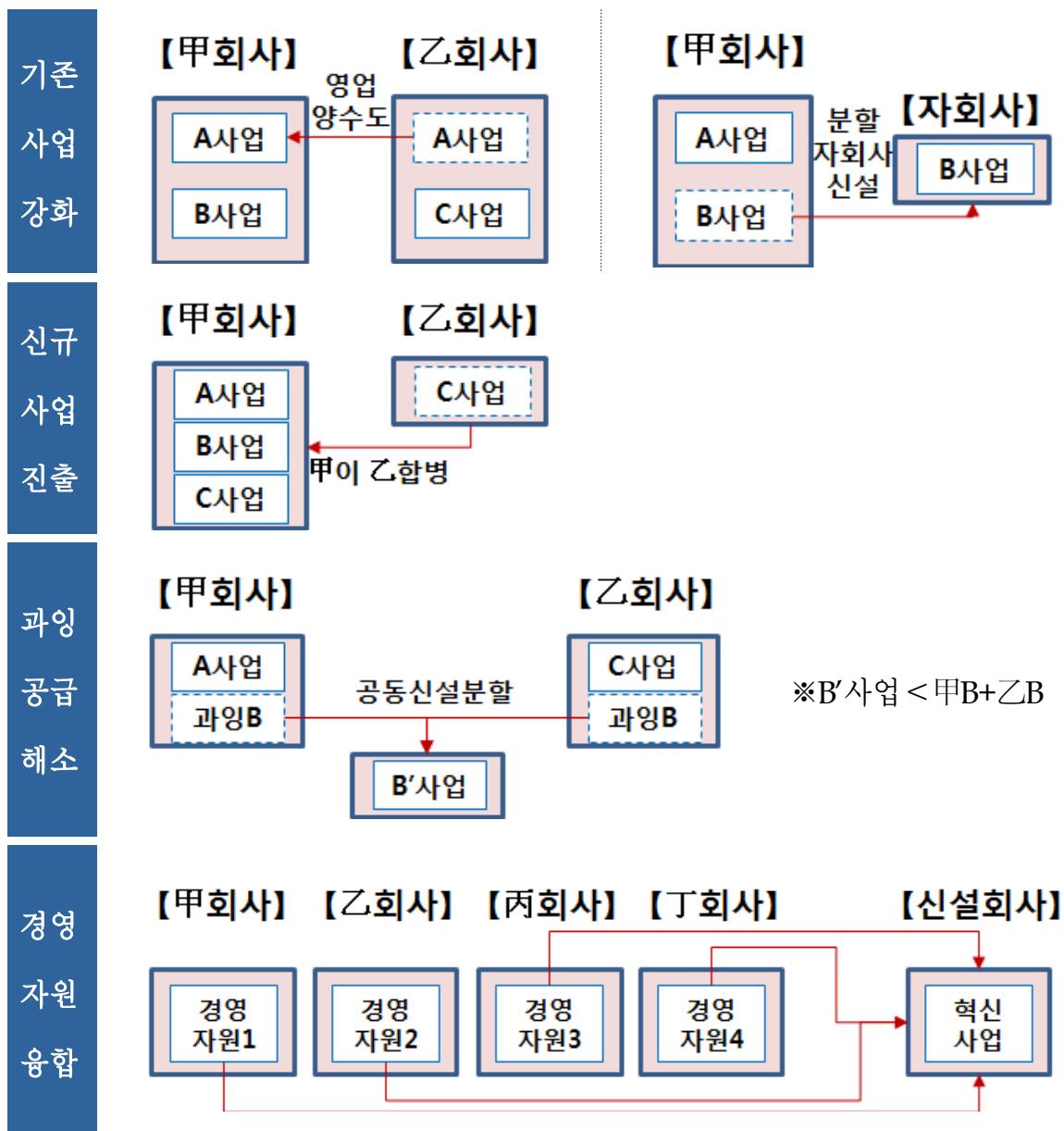
---

## □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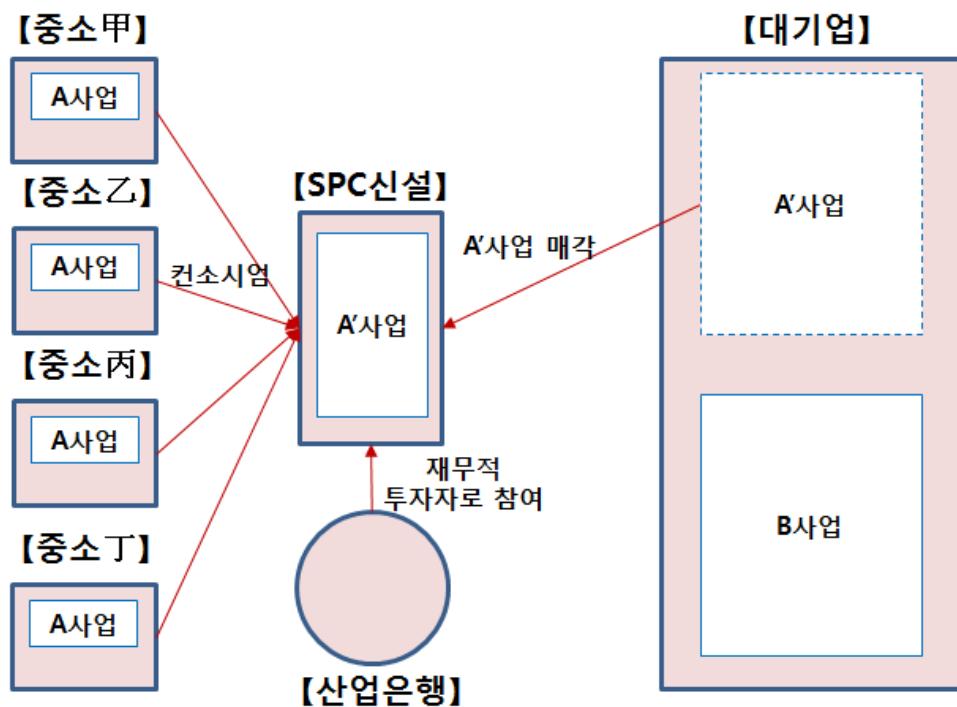
으로 합병, 분할 등의 형태로 사업구조를 재편

- 기존사업 강화, 신규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 경영자원 융합 등을 통해 기업쟁쟁력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기대되는 사업재편
- 사업재편의 방식은 합병, 분할, 주식교환 및 이전, 자산의 양수도, 타회사 지분취득 등 현행 제도상 허용하는 분야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 예시>



-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업부문을 인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15조원) 등 활용



- 사업재편의 결과, 일정기간 내에 생산성 향상, 새로운 시장창출,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될 때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
  - 단순한 사업재편과의 차별화를 통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경제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도 사업재편으로 생산성향상, 재무건전성, 사업혁신, 고용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승인
  - 승인기준은 과거 10년 또는 5년의 기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기준치 도출

<지원분야별 승인기준 예시><sup>5)</sup>

승인기준		기존사업 강화	신규사업 진출	경영자원 융합	과잉사업 공동재편
생산성 (택1)	1인당부가가치	5%이상↑	3%이상↑	6%이상↑	×
	ROE	3%p이상↑	2%p이상↑	4%p이상↑	2%p이상↑
	수정ROA	1%p이상↑	1%p이상↑	1.5%p이상↑	1%p이상↑
	경영자산회전율	0.02p이상↑	0.01p이상↑	0.03p이상↑	0.01p이상↑
사업혁신 (택1)	연구개발비/매출액	0.5%p이상↑	0.3%p이상↑	0.7%p이상↑	0.3%p이상↑
	제조원가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재무건전성 (모두충족)	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00%이상	3년 연속 100%이상	3년 연속 100%이상	3년 연속 100%이상
	유동부채비율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고용창출 (모두충족)	고용창출	고용유지	고용유지	고용유지	고용유지
	노사간 협의	협의필요	협의필요	협의필요	협의필요

주1) 1인당 부가가치 =  $\frac{\text{영업영여} + \text{인건비} + \text{감가상각액} + \text{금융비용} + \text{조세공과}}{\text{총업원수}}$

$$\text{자기자본순이익률(ROE)}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text{수정 총자산순이익률(수정ROA)} = \frac{\text{현금흐름}}{\text{자산}} \times 100$$

$$\text{경영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 + \text{투자자산})}$$

$$\text{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frac{\text{연구개발비}}{\text{매출액}} \times 100$$

$$\text{제조원가} = \text{기초재공품원가} + \text{당기총제조비용} - \text{기말재공품원가} - \text{타계정대체액}$$

$$\text{유동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주2) 고용유지 예외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시.

5) 현대경제연구원(2011.2.28), 기업 자율의 상시적 경쟁력강화 지원시스템의 지원분야 및 승인기준

### 3.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절차

---

-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기업결합 예비 심사, 카르텔 예외심사, 사전협의·계획신청, 계획심사, 계획승인 순으로 진행

#### 부실여부 심사

》 정상기업 위주의 제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신용위험평가



#### 기업결합 예비심사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대상인 경우,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의무화(현재는 임의심사요청제)



#### 카르텔 예외심사

》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이 다수 기업간 공동행위인 경우



#### 사전협의 및 계획신청

》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 신청 전에 기업과 주무부  
처간 사전협의



#### 계획심사 및 승인

》 심사위원회가 승인기준에 따라 합목적성, 목표·수단의 적절  
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승인

## 사업재편 패키지 지원과제 요약

분야	정책과제	주요내용
상법 관련 특례	①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10% 이하 → 20% 이하
	② 간이합병 요건 완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 → 2/3 이상 보유
	③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남용방지 장치 마련 비상장회사는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④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단축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1개월 → 20일)
	⑤ 채권자보호절차 합리화	채권자에게 손해발생의 염려가 없을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⑥ 구(舊)주권 제출공고 기간단축	주권제출공고 기간 단축(1개월 → 20일)
공정 거래 법 관련 특례	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일반심사(30일 → 15일), 간이심사(15일 → 7일), 연장기간(90일 → 30일)
	② 공동행위 예외인가 간주	승인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
	③ 지주회사 공동출자 허용	수직적 출자구조 내에서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④ 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100% → 상장 20%, 비상장 40%
	⑤ 비계열사 출자제한 면제	5% 초과 보유 금지 → 5% 초과 지분보유 허용
	⑥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준수 애로 해소	유예기간(1~2년(+추가2년)) → 사업재편기간(+추가2년)
세제 지원 특례	① 부동산 취득세 완화	4% → 2%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배제	2% → 비과세
	③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자본금 증기분의 0.4% → 0.2%
	④ 과세특례 적용 사업재편 요건 완화	적격합병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 부여
	⑤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범위 제한 완화	피합병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사업구분 없이 공제
	⑥ 과세특례 사업재편에 대한 사후추징 완화	지배주주 주식 처분 시 합병법인 등 과세이연 혜택 유지
	⑦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 완화	100% → 80%
	⑧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금융 지원 특례	①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조성	사업재편 자금조달 위한 펀드 조성
	②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제도와 연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규모 확대

## IV. 세부 지원과제

### 1. 상법 관련 특례

①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회사의 구조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구분	결의사항
【보통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4 &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기관구성) 이사, 감사, 청산인 선임 등 》(회계관련) 재무제표 승인, 배당 등 》(업무감독) 청산인 해임 등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3 & 출석의결권의 2/3 찬성	》(구조변경) 정관변경, 합병/분할, 영업양수 도, 이사/감사해임, 회사해산 등 》(자본금)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자본금 감소 등

- 다만, 소규모합병 등은 주주총회 결의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
  - \*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상법 제527조의3 ①)

- (문제점) 소규모합병 요건이 엄격하여 신속한 합병에 장애

-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
  - \* 미국의 모범회사법(MBCA), 일본의 신회사법은 20%로 규정. 일본 경쟁력강화법은 2/3까지 허용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합병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
  - \*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벤처육성법 제15조의9 ①)

## □ 개선방향

- 소규모합병 인정요건을 벤처기업 수준으로 완화(10% → 20%)
  - \* 존속기업 주주의 20%가 반대할 경우 소규모합병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상법 제527조의3 ④)

[2]

간이합병 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결의로 합병승인을 갈음 할 수 있음(상법 제527조의2 ①)
- (문제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2/3 이상 보유시,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는 의미가 없고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요건을 90%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
  - 주총 소집절차에 따른 신속한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 → 이사회 개최 후 주총 결의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소요
  - 일본 산업활력법은 간이합병 요건을 2/3까지 허용하고 있음

## <합병절차>

<p>-</p> 	<p>》 사전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회계, 조세 등 검토</li> <li>·일정, 절차 등 확정</li> </ul>
<p>D-32</p> 	<p>》 이사회개최 》 합병계약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결의, 주총소집 결의</li> </ul>
<p>D-31</p> 	<p>》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부확인기준일 2주전 공고</li> </ul>
<p>D-16</p> 	<p>》 주주명부확인 기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을 위한 권리주주확인일</li> </ul>
<p>D-15</p> 	<p>》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 2주전</li> <li>·주총 2주전~합병일부터 6개월</li> </ul>
<p>D-1</p> 	<p>》 합병반대 서면통지 접수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소집 통지일~주총 전일</li> </ul>
<p>D</p> 	<p>》 주주총회 개최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사는 매수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함</li> </ul>
<p>D+1</p> 	<p>》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구주권 제출 공고(피합병법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li> <li>·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li> </ul>
<p>D+20</p> 	<p>》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li> </ul>
<p>D+32</p> 	<p>》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li> </ul>
<p>D+33</p> 	<p>》 실질적 합병기일</p>	
<p>D+34</p> 	<p>》 이사회 개최(합병보고총회 갈음)</p>	
<p>D+35</p> 	<p>》 이사회 결의공고</p>	
<p>D+36</p> 	<p>》 합병등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총회갈음 이사회결의 공고일로부터 2주내</li> </ul>
<p>D+66</p> 	<p>》 기업결합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 후 30일 이내</li> </ul>

\* 비상장법인간 합병 기준

## □ 개선방향

- 간이합병의 인정요건 완화(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 → 2/3 이상 보유)

3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행 상법, 자본시장법은 합병, 분할, 주식이전/교환, 영업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게 하고 있음
- **(문제점)** 특히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이사회 결의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 회사가 의사결정 이후 주가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
  - 이사회결의 후 매수청구권 행사 종결일까지 통상 3~5개월이 걸리고, 이 사이의 시장상황 변경에 따른 주가변동에 의해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사례1] A회사 주주 甲은 주총前 합병반대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는 주총에서 甲이 합병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甲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시장거래가격 보다 높게 설정됐음을 보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기회적인 행동을 함

[사례2] B회사 주주 乙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각한 후, 며칠 후 시장을 통해 B회사 주식을 재취득함. B는 합병결의 시점까지 주가흐름을 보고 시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으면 시가에 매각하고, 시가가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는 식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투자에 대한 보험으로 활용

- 최근 합병거래 무산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 합병거래에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거래 해제사유로 규정하는 등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미국 델라웨어주 등 미국 36개주 회사법도 유동성 있는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 □ 개선방향

- 상장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남용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등의 결정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비상장회사 주식은 환가가능성이 적고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2개월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할 필요

④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단축 및 통지절차 합리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회사는 합병결의 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함(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 특히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
- (문제점)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이 길어 신속한 합병 추진에 걸림돌
  - '알고 있는 채권자'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실무상으로는 모든 채권자

에 대해 개별통지를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로 갈음 가능하고, 독일은 개별통지제도 없음

## □ 개선방향

- 채권자에 대한 합병이의 제출기간 단축 : 1개월 → 20일내
  - 현재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기한을 주총일로부터 20일 내로 규정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에서는 10일 이상으로 규정
- 채권자 개별통지를 금융위, 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

⑤

## 채권자 보호절차 합리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회사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 채권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함(상법 제232조 ③, 제527조의5 ③)
  - \* 합병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부터 보호
- **(문제점)** 합병 후 회사의 변제 여력에 변화가 없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보호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회사의 변제여력이 있음에도 채권자 보호절차의 강제는 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
  - 일본 회사법은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법에서는 채권자가 위험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호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 개선방향

- 합병으로 인해 채권자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음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변제, 담보제공, 신탁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

⑥

## 구(舊)주권 제출공고 기간단축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회사는 합병결의 후 주식 병합 과정에서 일정 기간(1개월 이상) 내에 구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함(상법 제440조)
- **(문제점)** 주권교환 기간이 길어 신속한 합병 추진에 걸림돌
  - 주주가 주권제출기간 내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주권을 증권예탁원에 제출하면 신주권으로 교부받을 수 있음(상법 제442조)

## □ 개선방향

- 주권제출공고 기간 단축 : 1개월 → 20일내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기한(주총일로부터 20일 내)과 통일

## 2.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

①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타방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

기업결합 유형	내용
①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 15%)이상 취득 · (20%이상 소유한 자가) 주식 추가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합병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④영업양수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⑤회사설립참여	·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신고시기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나, 대규모회사의 일정한 기업결합\*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에는 기업결합 완료행위가 금지됨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 대상

-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 가능. 단, 간이심사유형\*에 해당될 경우 심사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

\* 기업결합 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기업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혼합형 기업결합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심사기간 90일 연장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불명확

○ (문제점) 신속하게 추진돼야 하는 M&A 등의 특성상 장기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구조개선의 효과를 저해

- 기간 연장시 구조개선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M&A의 모멘텀을 약화
- 경쟁제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간이심사유형의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 일본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신속심사유형에 해당하는 M&A를 추진하는 경우 공정위는 7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

□ 개선방향

○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30일 이내 → 15일 이내
  - \*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은 정식신고시 심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15일 이내 → 7일 이내

○ 심사기간 연장사유 명확히 하고 협행 90일 기간연장을 30일로 단축

②

공동행위 예외인가 간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복수의 사업자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9조 ①)

- 다만, 일정한 목적<sup>\*</sup>을 위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공정거래법 제19조 ②)

\*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심사기준(공정위)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비교 평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할 수 있음을 규정

### ○ (문제점) 그러나 공정위는 공동행위금지의 예외 인정에 매우 소극적

- 법률상 예외적 인가요건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공동행위 인가 사례는 1건도 없음

\* 2009.8월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불황극복, 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레미콘 원재료의 공동구매, 레미콘 물량의 공동배정, 공동차량, 운송관리,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공동행위를 인가하여 사실상 거부한 것과 유사한 결과

- 공동사업 기업들이 특별법상 승인을 득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가를 받기 사실상 힘들어 기업구조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

### □ 개선방향

#### ○ 특별법에 따라 공동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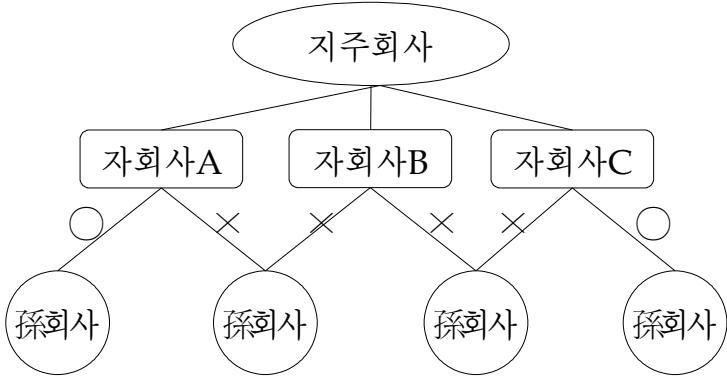
③

지주회사 공동출자 허용

###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교차·방사·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

-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하기 위해 단독출자만 허용



- (문제점) 엄격한 출자구조 제약으로 인해 M&A 등 추진에 애로
  - 1~2개 기업의 출자로는 M&A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곤란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과다한 재무리스크 부담
  - 공동출자 금지로 다른 계열사의 자금여력, 기술·사업경험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은 공동출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해외 주요국은 지주회사내 공동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점에 비춰 불합리

## □ 개선방향

- 복수의 자회사간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
  - 다만, 무리한 확장 등 악용가능성 방지를 위해 공동출자 자회사는 각각 지분보유율 조건(상장 20%, 비상장 40%)을 충족토록 함

④

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을 100% 취득하여 완전증손회사로 만들어야 함(공정거래법 제8조의2 ④)

- 다만, 외국인과 공동출자하는 경우 일정요건<sup>\*</sup> 하에 증손회사 보유 가능(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⑥)

\* i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소유, ii)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 iii)손자회사가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

#### ○ (문제점) 지분율 100% 조건은 증손회사 보유를 사실상 봉쇄돼 신규 사업 진출 등에 지장 초래

- 지주회사(A)의 자회사(B)가 자회사(D)를 보유한 회사(C)를 인수할 경우 D는 A의 증손회사가 되어 C가 100%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인수합병에 차질 발생

#### □ 개선방향

##### ○ 기업구조개선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증손회사 지분보유율을 완화

⑤

####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출자제한 배제

####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지주회사는 비계열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 금지(공정거래법 제8조의2 ②)

- 다만,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비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없음

##### ○ (문제점) 과도한 제한으로 신규사업 진출, 다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에 애로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 수 없고, 신규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재무부담을 가중
- 주요국 중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곳은 없음
    - \* 일본의 경우 비계열회사 주식을 10% 이상 취득시 보고의무만 부과
  - 동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5% rule(특정인이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을 참조해 도입한 규제로 단순 신고규제를 소유제한 규제에 차용한 것은 무리

## □ 개선방향

- 구조개선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출자제한 적용 배제

⑥

##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준수 애로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중 국내회사의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전환 (공정거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①, ②)
  - 지주회사로 전환 후 지분규제, 부채비율 등 관련 규제 적용을 1~2년 유예시켜 기업부담을 완화(공정위 승인 얻어 2년 추가 가능)
    - \* 부채비율 200% 초과(2년내 해소), 지분20~40%규제(2년내 해소) 등
- **(문제점)**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전환 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

## □ 개선방향

-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될 경우 관련 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1~2년(+추가2년) → 사업재편기간(ex. 4~5년)(+추가2년))

### 3. 세제지원 특례

---

①

부동산 취득세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장, 공장부지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해 4%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제11조 ①)

- 다만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간 합병,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등에 대해  
'15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①, ③)

- (문제점) 일부 사업재편에 대해 취득세 면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취득세 부담이 원활한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

#### □ 개선방향

-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 완화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배제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법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제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2% 과세(지방세법 제7조 ⑤)

\* 과점주주: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 다만 구조조정 지원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제외(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⑤)

- (문제점) 주요국 입법례 없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배, 이중과세 우려
  - 과세물건은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주주가 취득한 것이 아닌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

## □ 개선방향

-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배제

③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합병·설립·증자 등으로 회사 자본금 증가 시 증가액의 0.4% 등록면허세 부과(지방세법 제28조 ①)
- (문제점) 자본금 증가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요국은 과세하지 않거나 경감 규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 미국, 영국은 자본금 증가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승인 기업에 대해 등록면허세율 50% 경감

## □ 개선방향

-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본금 증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담을 50% 경감

4

#### 과세특례 적용 사업재편 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과세문제 발생. 단, 법인세 법상 적격합병, 적격분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과세이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대상	과세특례(적격합병 등)	과세대상(비적격합병 등)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피인수법인	》 양도손익 : 과세이연 *합병법인 등이 처분할 때 과세	》 양도손익을 각사업연도에 과세 *양도손익:합병대가—순자산장부가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인수법인	》 자산 취득가액 : 장부가액 》 합병법인 등의 자산에 대한 미실현평가이익(시가-장부가 액)에 대해 감가상각 및 자산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자산 취득가액 : 시가로 봄 》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 손금에 산입
피합병□분할 법인□피인수 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과세 이연	》 합병, 분할 등에 따른 의제배 당으로 보고 과세 *의제배당:합병대가등—주식장부가

- (문제점) 과세특례 요건이 엄격해 세부담이 발생해 사업재편의 걸림 돌로 작용
  - 적격합병을 통해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가액의 80%, 적격분 할은 100%를 주식으로 교부해야 함
  - 아울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분보유 및 사업을 계속 영위

## < 사업재편유형별 과세특례 요건 >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
사업 목적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간 합병	5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의 분할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간 양도·양수
지분 연속성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비율 80% 이상	분할대가 중 주식가액비율 100% (분할합병은 80% 이상)	인수대가 중 주식가액비율 95% 이상
사업 계속성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사업 영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사업 영위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사업 영위

### □ 개선방향

-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합병·분할·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적격 합병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 부여

5

###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범위 제한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사업재편 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범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법인세법 제44조의3 ② 및 제45조, 제46조의3 ② 및 제 46조의 4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④, ⑤)
  - 적격합병, 적격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구비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한해 피합병법인·분할법인·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가능

- (문제점)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결손금이 많은 기업의 경우 인수에 따른 리스크가 큰 만큼 결손금 승계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필요

## □ 개선방향

-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합병·분할·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적격합병 등에 준해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사업 구분 없이 공제 허용

⑥

## 과세특례 사업재편에 대한 사후추징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적격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이후 2년 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당초 적격합병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혜택 받은 것을 취소하고 세액추징(법인세법 제44조의3 ③, 제46조의3 ③, 조세특례 제한법 제37조 ⑥)
  - 법인 간 이전되는 자산의 미실현평가이익(구조조정 시점 장부가액 대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일시에 법인세 과세
- (문제점) 사업재편 후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경우 합병법인 등의 주주 및 피합병법인 등의 소액주주까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

### <애로사례>

- 》 코스닥 상장사 A와 대형 비상장사 B가 합병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었음. 이와 관련해 A사와 B사 간 합병비율 및 신주발행 내용 등을 정하는 합병계약과 동시에 A의 지배주주 甲과 B의 지배주주 乙간 합병 이후 합병 회사의 임원선임, 중요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정하는 주주계약 체결
- 》 양사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乙이 합병 이후 2년 내에 합병신주를 처분하게 되면 합병법인의 과세이연 혜택이 취소돼 세금이 추징되므로 甲은 손해를 보게 됨
- 》 이에 주주 간 계약 협상 과정에서 甲은 乙이 2년 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손해배상을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乙이 동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양사는 합병을 하지 못했음

## □ 개선방향

-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합병·분할·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사업 재편 후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합병법인 등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유지

7

##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0년부터 완전모자관계(자회사 주식 100% 보유)의 경우 연결납세 적용 가능(법인세법 제76조의8)
  - \*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 (문제점) 연결납세제도는 기업 조직형태(사업부제와 분사화)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주요국에 비해 연결대상 자회사 지분비율이 엄격

- 미국 80% 이상, 영국 75% 이상, 독일 50% 초과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 □ 개선방향

-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을 완화
  - \* 100% → 80% 등

⑧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세무상 비용 처리(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①)
  - 다만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 시 '15년 취득분에 한해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 중소기업 ('14.10.~ '15.12. 취득분) ±25% → ±50%, 서비스업 ('15. 1.~ '15.12. 취득분) ±25% → ±40%
- (문제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지속정비를 통해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많이 축소된 상황인 만큼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

## □ 개선방향

-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 연구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도입한 경우 가속상각 허용

## 4. 금융지원 특례

①

###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조성

#### □ 현황

- (현황)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지분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15.2월 시행)의 지원대상에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15.3월 무투회의)

#### <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 운용규모 : 총 30조원 (산업은행 15조원 + 민간 15조원 1:1 매칭)
- 대상기업 :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업체(SPC 포함)
  - \* 산업은행이 기업의 신청 받아 사업성 검토, 금융조건 협의 등 거쳐 약정체결
- 지원분야 : 신성장산업, SOC인프라 중심 (시설투자, R&D, 사업재편 등도 포함)
- 지원방식 : 주식 및 주식관련채,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한 지원
  - \* 총 소요자금의 50%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용

- (문제점) 지원대상에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한 계획 부재

#### □ 개선방향

- 펀드조성 등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 마련

②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제도와 연계

## □ 현황

- (현황) 현재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중

-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

구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 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 재무구조 개선 등 정상화/재창업
지원 사업	》 창업자금	》 신성장 기반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재도약자금: 구조개선 300억, 사업전환촉진 990억, 재창업 700억
규모	1조 4,000억 원	1조 3,270억 원	1,990억 원

-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정상화를 위한 자금 중 사업전환촉진자금(990억 원)이 있으며 사업재편에 활용 가능

- (문제점) 사업전환촉진자금은 기업의 경영여건 변화로 현재 영위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기존 주력업종의 강화에는 한계

- (업종전환) 현재 영위업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으로 100% 전환  
-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 30% 이상 추가

## □ 개선방향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강화

- (현행) 업종전환, 업종추가 → (개정) 기존 주력사업 강화